

[사법농단 ISSUE PAPER ⑧]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2018. 7. 16. (월)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10

1. 사안의 개요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는 기본급에 비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형태가 많고, 이러한 임금구조는 법정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보통 기업들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라며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은 산정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통해 이를 정당화해 왔다.

이에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등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잘못이라며, 추가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2년 이른바 「금아리무진 사건(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91046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행정예규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해석을 고수했고,¹⁾ 재계는 이러한 행정해석을 근거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배제해왔다.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은 더 많은 통상임금 사건을 가지고 법원을 향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 「갑을오토텍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2013. 5. 초순 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1) 「통상임금 산정 지침」,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의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GM사의 덴 애커슨 회장과 ‘통상임금’ 이야기를 나눈다. 애커슨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 된다는 조건부로 5년간 한국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하였고, 박 전 대통령은 통상임금에 대해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²⁾

2013. 7. 26. 한국 GM 사무직 근로자들이 낸 업적연봉에 관한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근로자들이 승소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이하 ‘경총’이라 함)는 2013. 7. 28. 경 “상여금이나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관하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³⁾ 그 이틀 뒤인 2013. 7. 29.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었던 이혜훈 의원 역시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촉구”하였다.⁴⁾

그리고 실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2012다89399호,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피고 회사가 상고, 2012. 10. 10. 상고장 접수)」 통상임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13. 12. 18. 전원합의체로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바꾸지는 못하였지만,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사합의로 이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과거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원고 패소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통상임금 판결’이라 함)을 한 것이다.

2) 연합뉴스, ‘칭 “미GM, 통상임금 해결 전제 80억불 투자 재확인”’, 2013. 5. 9.

3) 머니투데이, ‘재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필요”’, 2013. 7. 28.

4) 이데일리, ‘이혜훈 “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동해 통상임금 기준 마련해야”’, 2013. 7. 29.

근로자의 임금 관련 조항들은 강행법규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통상임금 배제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일반 원칙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과거의 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하 ‘특조단’)은 2018. 5. 25. 자 조사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하여 3건의 문서를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2건을 공개하였다.⁵⁾

첫 번째 문건은 2017. 9. 5. 공개변론이 있기 2주 전(2017. 8. 22.)에 작성한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⁶⁾이다. 두 번째 문건은 판결 선고 하루 후(2017. 12. 19.) 작성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파악 [69] [391]’에 관한 것이다.

한편 특조단이 통상임금에 관한 문건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71]’라는 또 다른 문건⁷⁾에서는 통상임금 사건을 “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라는 미명 하에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례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문건은 특조단이 암호파일을 열어보거나 검색어를 통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적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킨 4개의 파일 중 하나이다. 정다주 전 심의관과 임종현 전 차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통상임금

5) 문서번호 69, 391, 409번. 391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69번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밝힘.

6) 특조단 보고서 기재례에 따름. 이하 같음.

7) 80번 문서에 인용되거나, 82번 문서에 별첨으로 인용됨

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문건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를 조사 대상에 추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2013. 8. 22. 정다주 심의관이 임종현 기조실장의 지시로 작성·보고한 문건으로, 같은 해 9. 5. 공개변론을 앞두고 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 ii) 기타 고용, 분배, 임금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iii) 사법부의 판단에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여부 등에 관해 ‘재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책연구소’의 의견 등을 정리한 자료이다.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이 문건은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2013. 12. 18.) 다음 날인 2013. 12. 19. 정다주 전 심의관이 임종현 전 기획실장의 지시로 작성한 문건으로, i) 청와대, ii) 여야 각 당, iii) 재계, iv) 노동계, v) 언론계, vi) 온라인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이 중 <청와대 반응> 중 ‘대내적’ 평가 부분으로 다음과 같다.

1. 청와대

- **[대외적] 입장 표명 자제**

☐ “여야, 판결 존중하지만...온도차, 청, 말 아껴”(뉴데일리 보도 내용)
▶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동향을 파악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 **[대내적]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
 - ① 민정 라인을 통하여 판결의 취지가 잘 보고·전달되었음
 - ②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봄
 - ③ 판결 선고 결과에서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고민을 잘 헤아리고 이를 심분 고려하여 준 것으로 받아들임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가. 조사내용의 기재

특조단은 보고서는, [69/391] 문서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있는 부분’이 “청와대 입장”을 기재한 부분이라고 보고(조사보고서 148쪽),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018. 3. 20. 국회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었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이는 H4에서도 발견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391] 문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문건에는 ‘흡족’이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대내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는 기재”라고 하였다(조사보고서 149쪽).

또한 이들 문서에 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관해서는 “임종헌 기초실장, 정다주 심의관의 대면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종헌 기초실장이 정다주 심의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청와대의 동향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고, 임종헌 기초실장은 당시 카운트파트너인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동향을 들은 것으로 짐작되나 2013년 12월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교체 시기로 전임자(이혜진) 및 후임자(김종필) 모두와 최근 전화통화를 해 보았음에도 정확히 누구로부터 어떤 식의 표현으로 들은 것인지 잘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49쪽).

나. 특조단의 평가

특조단은 조사 대상이 된 사법농단 주요 의혹을 10가지로 추리면서 통상임금 전원 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을 하나의 주제로 삼았다(조사보고서 3쪽).

특조단은 문건 내용과 임종헌·정다주 진술을 종합하여, [391] 문건의 ‘청와대 (대내

적) 입장' 부분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임종헌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실에 판결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하여 청와대측에 별도의 설명을 하고 그 평가를 알게 되는 과정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조사보고서 150쪽).

한편 [409] 문건에 대해서는 “각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어느 한 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문건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 현안질의에 관한 답변에 사용할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다고 보임”이라고 한 다음 “다만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곧 있을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한다(조사보고서 150쪽).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이 사안에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재판부나 재판연구관이 아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 재판 진행 중, 개별 사건의 내용과 사회적 반응을 취합하고, 판결이 내려질 경우 경제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본래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하는 부서이다. 따라서 개별 재판의 내용은 물론 그 영향력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되며, 실제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사건내용을 조사하거나 각 사회부문의 입장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예상·분석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정치권력(청와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안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였다.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였는가. 권력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그 대가로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재판거래’의 목적이 아니라면, 달리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는 명백히 법원행정처의 권한 밖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실령 실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치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대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판결의 취지를 보고하였고 그 반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기조실장은 법무비서관 등을 통하여 민정수석실 당시 민정수석 : 홍경식)에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대내적 평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 정치권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민정수석에게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정수석실의 평가를 전해 듣는 것 자체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판결 내용에 관한 교감을 직·간접적으로 나누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권한 범위 내이거나 직무상 의무가 아닌 것은 물론, 정치권력과의 음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소통이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가 언급하였듯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 충분한 부적절한 행

8) 실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71]’라는 문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노력한 사안으로 경제, 노동 관련 사건이 다수 제시되어 있으나, 통상임금 사건과 같이 판결 선고 전에 기조실에서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은 통진당, 원세훈, 전교조 사건 등과 같은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거나 큰 관심을 가졌던 사건들이다.

위”일 뿐 아니라, 사법부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이자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사무의 원활한 관리를 통해 정작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내용상으로도 기획조정실장이 판결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전해 받은 청와대는 해당 판결이 재계와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해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사전 교감의 존재와 재판거래를 통한 정치적 목적 추구를 추단할 수 있다. 청와대의 이러한 ‘관심표명’이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특정문제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하게 했다고 짐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조치가 단순히 판결 선고 후 취지 전달에 그쳤는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원에서 이렇게 음성적이고 변칙적인 정치권력과의 의사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82]’ 문건 5쪽을 보면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왔다”고 이야기하며 그 예로 통상임금 판결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같이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와 ‘사전교감’, ‘조율’, ‘원만한 유대관계’의 내용이 비단 판결 결과의 사후 보고와 반응 청취에 그치지 않는 것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문건은 특조단이 암호파일을 열어보거나 검색어를 통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적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킨 4개의 파일 중 하나이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조사보고서에는 이 문건의 작성경위에 관한 기재가 없다. 즉,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발견했다고 했 으면서도, i) 구체적으로 이 문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것인지, ii) 당사자들의 어떤 진술에 의하여 이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인지, iii) 왜 이를 굳이 조사 대상으로 추가하였는지, iv) 작성 경위와 목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한 정황 설명이 없는 것이다.

특조단은 그저 문건이 각 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대한 현안질의에 관한 답변에 사용할 참고자료로 작성되었다고 보인다”는 추정만 덧붙이고 있으나(조사보고서 150쪽),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특조단의 추론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문건이 작성된 무렵인 2013.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실시한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실제 이 기간 대법원에 대한 현안질의는 실시되지 않았다.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앞서 지적하였듯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보고서, 특히 그 중에서도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은 통상임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22.)은 물론 공개변론(2013. 9. 5.) 이전인 2013. 8. 22. 작성된 것으로, 다른 사건과는 달리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가 발견된 몇 건 중의 하나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판결 선고 전에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재판거래에 대한 강한 의심의 근거가 된다. 단순히 판결 결과를 유리하게 가공하여 정책적 목표를 위해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권력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위해 재판 결과에 대한 사전적인 개입(조율)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재판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연히 당사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 작성 경위(예컨대 정다주 심의관이 어떠한 자료를 보고 누구에게 문의하여 재판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사건 담당 재판연구원들과의 접촉 여부)와 보고서의 활용(작성된 보고서는 누구에게 보고 또는 열람되고, 보고받은 사람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등에 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 조사대상자 확대

법원이 공개한 98개의 문건 중에서 청와대에 판결을 전달·보고했다는 기재는 딱 2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이 통상임금 사건이고, 하나는 원세훈 사건이다. 이렇듯 청와대에 별도로 전달·보고할 만큼 깊이 교감하고 있었던 원세훈 사건에서는 법원이 청와대의 입장에 맞도록 여러 가지로 재량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역시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원세훈 재판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이라는 문건이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재판장으로 전원합의체 재판을 진행한 대법원장에게 전달되었는지, 반대로 문건의 작성 과정에 대법원장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문건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전달되지는 않았는지, 청

와대 역시 어떠한 입장을 사법부에 전달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통상임금 사건에 관여한 재판연구원, 보고서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나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